

광고심의 요청사항

- 심의 기준 : 붙임 참조
- 심의 요청 : 8역 3개광고

| 연번 | 역명 | 유형 | 광고주 | 심의내용 | 기간 | 수량 | 결과 |
|----|---------|----|---------|----------|--------------|----|----|
| 1 | 강남구청 | 조명 | 연세닥터연치과 | 체크리스트 평가 | 계첩 후~ '19.01 | 1 | 승인 |
| 2 | 광명사거리 | | 이지내과 | 체크리스트 평가 | 계첩 후~ '19.01 | 1 | 승인 |
| 3 | 철산 | | | 체크리스트 평가 | 계첩 후~ '18.09 | 1 | 승인 |
| 4 | 마포 등 5역 | | 닥터스피부과 | 체크리스트 평가 | 계첩 후~ '18.09 | 5 | 승인 |

- 광고관리규정 제30조(체크리스트 평가표)

조명광고 도안내용

| | |
|--|---|
| <p>역 명 : 강남구청역 광고주 : 연세닥터연치과</p>  | <p>역 명 : 광명사거리, 철산역 광고주 : 이지내과</p>  |
|--|---|

| |
|---|
| <p>역 명 : 마포, 애오개, 광흥창, 대흥, 효창공원 광고주 : 닥터스피부과</p>  |
|---|

광고물 심의 기준

1. 금지광고물

계약서 (제19조)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저촉되는 광고물
2.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자율심의규정에 저촉되는 광고물
3. 발주자의 광고관련 규정의 심의기준에 저촉되는 광고물
4. 기타 지하철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광고관리규정 제7조(금지광고물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2. 지하철 안전운행과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3. 주류, 대부업 등 사회적 상규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광고물 등

광고관리규정 제29조(광고물 심의기준)

1. 제7조(금지광고물 등) 해당 여부 및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자율심의규정 및 관련 법령 저촉 여부
2. 국내·외 당해 광고관련 당사자 간 분쟁 여부
3. 광고에 적시한 문구 등의 사실일치 여부
4. 광고도안 및 내용의 사회윤리 부합 여부
5. 지나친 노출 등 성적충동 유발 가능성 여부
6. 어린이,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폭력성 및 저속한 표현 여부
7. 어린이, 청소년의 비행 또는 범죄에 관한 긍정적 묘사 여부
8.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 사행심 조장 여부
9.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광고 여부.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한 국내 결혼 중개업은 제외
10. 대부업 및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광고 여부
11.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당 또는 정치광고 여부. 다만, 광고 제한기간이 아니라도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
12. 성형 전 또는 후 사진 게시 및 객관적 입증이 곤란한 표현 여부

붙임 #2

체크리스트 평가표 (제30조관련)

〈1단계 체크리스트〉

성, 이념, 인권 종교 등 사회적 갈등 유발 요소 및 폭력성 등 주관적인 개념에 대한 판단 필요여부를 기준으로 점검

판단필요 상업광고 판단불요 상업광고 사회적 광고

〈2단계 체크리스트〉

| | | | |
|------|--|-------|--|
| 광고주 | | 광고대행사 | |
| 광고매체 | | 광고위치 | |
| 광고기간 | | 광고요청일 | |

판단필요 상업광고

| 점검항목 | 점검사항 | 해당여부 | |
|--|--|---|--|
| 금지기준 |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 | |
| |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가 | | |
| | ▶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가 | | |
| | ▶ 사행사업(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가 | | |
| |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가 | | |
| | ▶ 지하철 안전운행과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 | |
| | ▶ 주류, 담배, 대부업 등 사회적 상규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가 | | |
| 제한기준 | 종교 | ▶ 타 종교인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신앙을 설파하는 종교 광고인가 | |
| | 정치 | ▶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 | |
| | | ▶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당 또는 정치광고인가 | |
| | 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 | ▶ 점술, 사주, 관상, 수상, 인장 작명, 철학원 등의 광고인가 | |
| | 어린이, 청소년 보호 | ▶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폭력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비행 또는 범죄에 관해 긍정적으로 묘사 하였는가 | |
| ▶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협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협한 행동을 하게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 | 해당여부 | |
|------------------|---|--|--|
| 계 입 | ▶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가 | | |
| |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가 | | |
| | ▶사회적 위화감이나 열등감을 조성하는가 | | |
| 의 료 (성형 포함)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가 | | |
| | ▶치료가 아닌 미용, 성형 목적의 전·후 비교 또는 성형 후 사진을 표현하고 있는가 | | |
| | ▶특정 신체부위의 과도한 부각이나 노출이 있는가 | | |
| | ▶구체적인 성형비용 명시 등 성형을 직접 유도하는 내용이 있는가 | | |
| | ▶‘최다, 최고, 1위’ 객관적인 입증이 곤란한 표현이 있는가 | | |
|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 | |
| | ▶통상적인 의학용어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든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는가 | | |
| |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가 | | |
| | ▶수술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가 | | |
| | ▶의료기술, 시술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 | |
| |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 | ▶특정 질병에 대하여 과도하게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가 | | |
| 일 반 기 준 | ▶사회적 통념을 감안하여 폭력·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 | |
| | 윤리성· 공정성 | ▶공정성과 윤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 합법성· 상호합의 존중 | ▶법령을 미준수·위법행위를 조장하지는 않는가 | |
| | 인간 및 국가 존엄성 | ▶인간생명과 존엄성을 해치거나, 국기 및 인물 모독행위를 하는가 | |
| | 진실성 | ▶허위, 과장,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현을 하는가 | |
| | 품 위 | ▶광고에서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가 | |
| | | ▶광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가 (폭력성, 혐오감, 선정성, 위화감, 미풍양속저해 등) | |
| | 심미성 | ▶심미성을 저해하고 있는가 (공사 이미지 저해, 과도한 문자·자극적 색채 사용) | |
| | 광고주 표시 | ▶광고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 |
| 저작물 보호 | ▶타 저작물을 표절, 모방,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 | 해당여부 |
|------------|--|------|
| 초상권, 상표권보호 | ▶초상권 및 상표권 등을 침해 하고 있는가(동의가 없는 경우) | |
| 언어 | ▶과도한 비속어, 은어, 기타 광고에 부적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환경보호 | ▶환경보호 저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차별금지 | ▶차별 및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기타사항 | ▶소비자 사행심을 조장하는가 | |

사회적 광고

| 점검항목 | 점검사항 | 해당여부 | |
|-----------------|-------------------------------|--|--|
| 성별 영향 | 성역할 고정관념/편견 |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 |
| | 성차별적 표현/비하 | ▶ 성차별이나 비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 |
| | 외모지상주의 | ▶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 |
|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피해자를 구분하거나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 | |
| 이념, 인권, 종교 영향 등 |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차별, 인권의 경시 등 | ▶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또는 비하하는 표현이 있는가 | |
| | | ▶ 특정 이념·종교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 | |
| | | ▶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표현이 있는가 | |
| | 기타 사회적 논란/민원 발생 가능성 | ▶ 기타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